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의신청 제도 정비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95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의신청 제도 정비(안 제14조, 제30조 및 제33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 제30조 및 제33조).

Ⅲ. 검토의견

1. 이의신청 제도 정비(안 제14조, 제30조 및 제33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상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4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제30조),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3조) 청구 및 처리 기한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기한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 ⑤ (생략)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u>10일 이내</u>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 ----- ----- <u>30일 이내</u> -----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 ----- <u>14일</u> 이 <u>내</u> ----- ----- -----.
<신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u>소관</u>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권고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 -----. ④ 제3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재검토 요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제6항----- -----.

현행	개정안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② (생략)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20일</u>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 ----- -----30일 이내-----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 ----- -----14일 이내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제8항----- ----- -----.

나. 검토의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¹⁾

한편, 현행법에 따른 국가 R&D 과제 평가는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로 구분되는데,²⁾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후 략)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권고할 수 있는데,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토 요청 기한은 권고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제재대상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다시 결정하여야 함.

<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 비교 >

이의신청 종류(근거 조항)	청구 기한	처리 기한	연장 기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	30일	14일	10일
과제 평가 이의신청 (현행법 제14조)	10일	30일	-
제도 개선 권고 재검토 (현행법 제30조)	20일*	-	-
부정행위 등 제재처분 재검토 (현행법 제33조)	20일	30일	-

* 현행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규정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처분 대상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할 수 있으며, 처리 기한이 긴 경우에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이 필요한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한에 따라 30일의 청구 기한과 14일의 처리 기한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통일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과제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정 이후 5년간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이의신청 청구까지는 7.3일, 이의신청 처리에는 21.9일이 소요되고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과제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소요 기간 현황 >

전문기관 (소관부처)	구분	이의신청 청구	이의신청 처리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평균 건수(건)	213.8	213.8
	평균 기간(일)	6.42	21.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기정통부)	평균 건수(건)	8.6	6.2
	평균 기간(일)	6.86	13.1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부)	평균 건수(건)	42.4	42.4
	평균 기간(일)	6.7	27.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평균 건수(건)	15	14.4
	평균 기간(일)	7.18	15.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부)	평균 건수(건)	18.2	18.2
	평균 기간(일)	9.3	20.2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기부)	평균 건수(건)	342.6	342.6
	평균 기간(일)	7.84	22.8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평균 건수(건)	2	2
	평균 기간(일)	5.56	4.9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평균 건수(건)	8.4	8.4
	평균 기간(일)	7.9	30.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	평균 건수(건)	8	8
	평균 기간(일)	7.82	20.2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부)	평균 건수(건)	4.4	4.4
	평균 기간(일)	7.7	2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평균 건수(건)	10.4	10.4
	평균 기간(일)	8.2	11.66
농촌진흥청 (농진청)	평균 건수(건)	1.6	1.6
	평균 기간(일)	2.7	3.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평균 건수(건)	0.4	0.4
	평균 기간(일)	4	7.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평균 건수(건)	2.2	2.2
	평균 기간(일)	2.26	13.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안위)	평균 건수(건)	0	0
	평균 기간(일)	0	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평균 건수(건)	10	10
	평균 기간(일)	7.3	11.8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과기정통부)	평균 건수(건)	2.2	2.2
	평균 기간(일)	8.36	12.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기정통부)	평균 건수(건)	4.6	4.6
	평균 기간(일)	7.72	17.76
전체	평균 기간(일)	7.3	21.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4.)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늘릴 경우 더 폭넓은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의신청 청구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경우 사업 내 모든 과제의 평가 결과 확정과 이에 따른 연구비 지급이 20일 이상 지연됨에 따라 연구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청구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따라 법정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14일(연장 시 최대 24일)

로 단축시킬 경우 한국연구재단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다수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기한 내 이의신청 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단계적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과소한 처리 기한이 오히려 이의신청 수용을 제한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둘째,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하여 재검토 요청 기한만이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재검토 요청 및 처리 기한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제도 개선 권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4일(연장 시 최대 24일)의 처리 기한 준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제도 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바, 해당 조항의 개정 실익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처분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30일로 설정된 재검토 처리 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연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 소관 행정기

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다시 결정하게 되는데,³⁾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대한 제재처분 검토 요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검토조차 현행 30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의 제재처분 재검토 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재검토 요청 건수(건)	274	311	363	394
재검토 평균 기간(일)	50.8	76.5	92.3	14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4.)

게다가 제재처분 재결정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⁴⁾ 제재처분 재검토 처리기한을 14일(연장 시 최대 24일)로 줄이는 것은 현행 제도 하에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재처분의 적절성 심의를 위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와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14일의 처리 기한은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21) 237건 → ('22년) 275건 → ('23년) 276건 → ('24년) 35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4.)

문 의 처
02)6788-5227